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59호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49호 인천애(愛)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49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9.

인천광역시장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으로 조성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관리, 사용시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또는 제한, 사용허가 통지 방법,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사용 후 원상회복 의무, 무단점유자 등에 대한 철거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

- 마.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부터 제21조)
- 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용을 규정함(안 제23조)
-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 440-25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4. 참고사항

- 가.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애(愛)뜰”(이하 “인천애뜰”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및 1336번지 일원에 조성된 잔디마당을 포함한 광장 일대를 말한다.

제3조(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애뜰이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인천애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또는 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법인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용시간) 인천애뜰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행사 등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천애뜰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은 인천애뜰의 사용허가를 처리하는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게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서류의 보완을 완료하여 접수된 시점으로 하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기념행사 및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신청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천애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15조에 따른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애뜰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또는 제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인천애뜰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인천애뜰을 사용하려 하거나, 연간 사용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4. 인천애뜰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5. 인천애뜰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어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신청자들의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제8조(사용허가 통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신청자의 인천애플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인천애플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 조건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취소·정지 처분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 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 행사 참가자의 질서유지와 행사장 내 잡상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은 「소음·진동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천애뜰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한다.
- ④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는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일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 사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인천애뜰 사용 후 행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사용허가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애뜰 사용으로 인하여 인천애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인천애뜰의 무단점유 등으로 사용자의 인천애뜰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천애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천애뜰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문화·예술·공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4. 인천광역시 3급 상당의 실·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애(愛)뜰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FAX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신청단체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 책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사용인원			사용구획	
			사용면적	m ²
행사내용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지 제2호서식]

인천애(愛)뜰 사용허가 통보서

사용허가 신청번호 :

사 용 자	단체명				
	대표자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분)
사 용 면 적		m ²	사 용 료	원	
허 가 조 건 및 기 타 사 항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표]

인천애(愛)뜰 사용료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기본 사용료		1m ²	1시간	10원	
구 획 별 사 용 료	잔디마당	500m ² ~ 3,160m ²	2시간	10,000원 ~ 63,000원	
	잔디마당 동편광장	500m ² ~ 2,501m ²	2시간	10,000원 ~ 50,000원	
	잔디마당 서편광장	500m ² ~ 1,400m ²	2시간	10,000원 ~ 28,000원	
	잔디마당 전체부지	7,061m ²	2시간	141,000원	
	바닥분수 광장	500m ² ~ 1,663m ²	2시간	무료	
	음악분수 광장	500m ² ~ 880m ²	2시간	무료	
기 타	<p>1.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허가한다 . ※ 최소 사용면적은 500m² 하되, 500m² 초과 시, 1시간 1m²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하되, 1시간 미만 단위는 1시간으로 본다.</p> <p>2. 야간사용료 (18:00 ~ 22:00) 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p> <p>3.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p> <p>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p> <p>5. 사용시간은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 제136조(사용료) <input type="checkbox"/>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